

기업동산의 담보활용을 위한 법제정비방안*

박 환 일*

<차 례>

I. 머리말	2. RFID를 활용한 담보관리
II. 새로운 접근방법의 필요성	IV. 채권양도의 쟁점
1. 첨단 정보기술의 활용	1. 매출채권을 이용한 자금조달방안
2. e-마켓플레이스의 조성	2. 채권양도 대항요건의 쟁점에 따른
3. 배드뱅크의 필요성	이점
III. RFID를 활용한 動産擔保管理	V. 결론 - 법제정비방안
1. RFID를 이용한 현행 문제점의 극복	

I. 머리말

최근 은행들이 기업대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대기업의 투자가 저조한 까닭에 자금운용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동안 위험가중치가 낮아 은행들이 선호하였던 주택담보대출¹⁾은 집값 상승을 우려한 금융감독 당국의 잇따른 규제조치에 따라 크게 위축되었다. 부동산 담보대출은 IMF 위기 직후에 경험했던 것처럼 부동산 경기가 하락할 때에는 대거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부동산 외에 확실하고 안전하면서도 간편하게 취급할 수 있는 새로운 담보수단²⁾이나 담보가 될

* 이 연구는 2006년도 경희대학교 연구비지원에 의한 결과(KHU 2006-013)이며, 이 논문에 대하여 친절하게 코멘트해주신 UCLA 로스쿨의 린 로푸키(Lynn M. LoPucki) 교수에게 감사드린다.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법학박사.

1) 대부분의 은행들이 아파트 담보대출을 선호하는 것은 매매가 용이한 것도 있지만 BIS 위험가중치가 50%에 불과하여 여신증가 대비 위험자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2) 오늘날 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①재고자산 및 매출채

만한 자산을 발굴하는 일에 부심하고 있다.³⁾

新BIS 협약(Basel Accord II)에 따라 위험관리에 더욱 힘써야 하는 은행들로서는 신용대출에 나서기도 어려운 만큼 은행들이 안심하고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과 제도적 인프라의 확충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그 동안 취급상의 곤란으로 인하여 외면되었던 공장의 기계·기구, 재고자산을 담보로 활용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⁴⁾ 나아가 현재 부분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매출채권이나 지적재산권에 대하여도 그 담보가치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기를 띠고 있다.⁵⁾ 현재 일본이 전자등기 방식으로 동산 및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 특례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는 바, 우리 대법원에서도 채권양도 및 동산담보 등기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⁶⁾ 정부는 기업환경개선 종합

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 ②일정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흐름(cash flow)에 착안하여 동 자산을 유동화하는 것, ③상당한 수익이 예상되는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으로부터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것(project financing) 등이다. 일본의 기업법제연구회는 이러한 방식의 자금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면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제도개선안을 내놓았다. 日本企業法制研究會(擔保制度研究會)報告書, 不動産擔保から事業の収益性に着目した資金調達へ, 經濟産業省, 2003.1; 박원일, “RFID를 활용한 금융기관의 담보관리방안”, 금융법연구 제1권 2호, 2004.12.

- 3) 예컨대 우리은행은 2006년 7월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한 대출을 개시하여 큰 인기를 끌었다. 골프회원권 담보대출은 골프장건설자금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제공하는 경우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주차장운영권이나 여장조업권은 현금수입을 매출채권형식으로 양도하여 자산담보부증권(ABS)을 발행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저축은행 등에서 취급해온 골프회원권 담보대출을 시중은행들이 취급하는 것은 공익책임이 있는 대형은행들이 은행을 전담포화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파이낸셜 뉴스 2006.7.24.
- 4) 남윤삼, “우리나라 동산담보제도의 개선방향(上) -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사법행정, 1999.2; 독일에서 한때 활발히 논의되었던 동산담보제도의 개선방안, 즉, 非占有動産擔保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미국 동산담보법과 비슷한 등록제도, 통일적 담보권을 도입하자는 학계의 주장을 소개한 논문으로는 양창수, “독일의 동산담보개혁논의 - 비점유동산담보제도를 중심으로”, 법학, 제44권 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6 참조; 동산담보법계의 典範이라 할 수 있는 UCC Article 9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는 박원일, “개정 美동산담보법의 국내 담보법제에 대한 시사점”, 경희법학 제37권 1호, 2002.12. 참조.
- 5) 김재형, 동산담보등록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 용역연구보고서, 2006.2; 박원일, “전자채권등록제도와 국내 입법”, 국제거래법연구 제15집 1호, 2006.7.; IT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특허기술 등을 담보로 활용하는 방안이 다각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감정연구회, S/W등 디지털정보재산권 가치평가 및 담보제도도입에 관한 연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2.11.

대책의 일환으로 동산담보제도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⁷⁾

본고는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기계·기구 및 재고자산 등 기업의 동산을 담보로 활용하고, 기업의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그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첨단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을 활용하였을 때 과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와 관련된 법제는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II. 새로운 접근방법의 필요성

1. 첨단 정보기술의 활용

굳이 신용대출을 받지 않더라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다면 보다 좋은 조건으로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담보가치를 얼마나 용이하게 현금화할 수 있느냐,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담보권을 취득·관리하고 채무불이행 시에 이를 실행할 수 있느냐, 목적물을 채무자가 계속 점유하며 사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 기업자산은 매우 제한적으로 담보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 공장 기계·기구나 원료·완제품 등의 재고자산은 그 가치가 상당함에도 이를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한정되어 있다.⁸⁾ 공장 기계·기구는 공장부지 또는 건물 위에 설정된 공장저당권에 목록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공장저당법 제7조 1항),

6) 매일경제신문, “매출·대여금채권 양도 쉬워진다”, 2006.8.2.

7) 김재형, 앞의 보고서, 171면; 재정경제부는 기업환경개선 제2차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그 동안 논의와 검토에 그쳤던 동산담보제도 도입 등에 대해서도 기업 투자활동에 대한 장애요인을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07.2.15.

8) 현재 기계·기구 기타 공장공용물은 공장저당권에 대한 목록추가 형태로 담보로 제공되고 있으나, 공장저당법에 의하면 같은 기계·기구라 해도 제2조의 공장, 즉 ‘영업을 하기 위하여 물품의 제조, 가공 또는 인쇄나 촬영의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에 설치된 것이라야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계·기구가 어느 곳에 있는지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이동가능성(mobility)을 전제로 한 새로운 담보제도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창고 안에 있는 재고자산도 集合物양도담보의 형태로 담보로 활용하고 있으나 채권자는 담보관리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담보가치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⁹⁾ 우리나라에서는 一物一權主義를 취하기 때문에 기업동산을 일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공장저당법 등 법률로 인정된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¹⁰⁾

그러나 정보기술(IT)의 비약적인 발달로 기업동산에 대하여 특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개별적으로 공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바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¹¹⁾태그를 목적물에 부착하거나 내장시킴(embedded)으로써 당해 물건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관독할 수 있기 때문이다.¹²⁾ 현재 RFID는 유비쿼터스 컴퓨팅(ubiquitous computing)¹³⁾의 핵심소재로서 그

-
- 9) 은행실무자의 입장에서 공장 기계·기구는 실물과 목록의 대조·식별이 어렵고 리스 물건과의 혼동 우려, 공장 밖으로의 무단반출, 제3자에 의한 善意取得 우려 때문에 담보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현실적으로 공장물건은 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실행이 임박할 즈음에는 경매에 붙이기 어려울 정도로 그 가치가 현저히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 10) 영미법제의 浮動擔保(floating charge) 제도의 국내도입 가능성을 검토한 논문으로는 박철일, “미국의 부동담보제도”, 비교사법 제10권 4호, 2003.12. 참조; 일본에서도 동산담보법제의 논의를 시작하였을 때에는 현실적으로 공시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큰 집합동산에 한하여 동산양도등기를 이용하게 할 방침이었다. 실제 많이 이용되고 있음에도 법제화할 때에는 집합동산의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데다 개별동산 중에도 등기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고가의 물건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한다. 김재형, 앞의 보고서, 90~91면.
- 11) RFID는 ‘전파식별’이라고도 하는데, 초소형 마이크로 칩과 안테나로 구성되어 있다. 이동용 단말기(mobile device)와는 달리 가격이 저렴하고 사용방법도 간편할 뿐만 아니라 그 용도가 무궁무진하다. RFID를 이용하여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USN)를 구축하면 우리는 공간과 거리의 제약이 없고, 네트워크, 단말기, 서비스, 콘텐츠의 제한이 없는 환경 속에서 살게 된다. 유비쿼터스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하고, 고도로 지능화된 시스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온/오프 라인이 연계되어 자연스러운 정보통신기기의 사용이 가능해진다.
- 12) RFID태그는 판독기(RFID reader)를 통해 정보를 읽거나 고칠 수 있는데 부착하는 물건의 성상에 따라 원관형, 라벨형, 카드형, 상자형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RFID태그는 데이터의 송·수신이 가능하고, 비활동성(passive) 태그는 배터리가 없어도 작동하며, 전원이 내장된 경우에는 스스로 전파를 발생시키는 활동성(active) 태그가 된다. 얇고 작게 만들어 물건 속에 집어넣거나 스프레이로 붙일 수도 있다. 현재 RFID태그는 정보를 읽기만 할 수 있는 저가형에서부터 각종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는 고성능 제품까지 다양하게 나와 있다.
- 13) ‘유비쿼터스’(ubiquitous)란 본래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라틴어에서 유래하는 말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주변환경 속의 새로운 공간을 의미한다. 팔로 알토에 있는 제록스 연구소(PARC)의 컴퓨터 공학자 마크 와이저는

용도가 크게 확대되고 있거니와 특히 유통·물류 분야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기계·기구나 원료, 반제품, 완제품에 RFID태그를 부착하거나 내장시키고 이를 RFID 리더로 통제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이들 기업동산의 위치와 가치를 파악할 수 있고 나아가 이를 전자방식으로公示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담보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다면 이를 등기·등록하는 방식으로 채무자가 계속 점유·사용하면서 담보권(non-possessory security interest)¹⁴⁾을 설정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만일 RFID태그에 기록된 정보를 소정 양식에 따라 전자적으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마치 저당권과 같이 채권자에게 우선변제적 효력을 부여하면서 담보가치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담보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 法人의 동산에 한하여 RFID태그를 부착시키고 전자등기를 함으로써 담보로 활용하는 것이므로 나머지 동산에 대하여는 현재와 같은 인도, 점유개정에 의하여 담보권을 설정하면 된다.

기업동산에 RFID태그를 부착하여 담보관리를 하는 또 다른 이점은 담보목적물에 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수 있으므로 채권회수를 위해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이 훨씬 용이해진다는 점이다. 예컨대 기계·기구나 재고자산을 경매에 붙이는 경우에도 목적물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자동적으로 거래소에 공시되므로 願買者가 상세한 정보를 확보하고 경매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e-마켓플레이스의 조성

그 동안 기업동산이 담보로서 효용이 떨어졌던 것은 완제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품가치가 떨어져 제값을 받고 이를 처분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가치를 최대한 발굴하여 원매자를 찾고 관련정보를 공

1991년 “많은 사람이 한 대의 대형 컴퓨터를 공유하던 메인 프레임 시대에서 개인용 컴퓨터 시대를 거쳐 개개인이 현실세계와 효과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많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제3의 컴퓨팅 파도가 닥칠 것”이라고 일찍이 예견하였다.

14) 비점유형 담보권의 활용은 세계적 현상으로 東歐와 中國 등 체제전환국들은 물론 새로운 담보수단을 모색하는 Unidroit, UNCITRAL, 美洲국가기구(OAS)에서도 동산 및 채권을 대상으로 한 비점유형 담보제도의 도입에 주력하고 있다. 박현일, 남북경협 확대에 대비한 북한 담보제도의 정비방안, 집문당, 2004, 131~132면.

시하여 거래가 성립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목적물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공시하고 더 많은 거래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켓플레이스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현실의 시장뿐만 아니라 사이버공간에도 거래소를 만들도록 한다. 관심 있는 원매자, 투자자들이 거래정보를 열람하고 거래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경매(auction)와 같은 다양한 거래방식을 통해 거래가 활기를 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시장참여자를 확대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e-market place: e-MP)를 조성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국내 거래자는 물론 해외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거래방식을 유지하고 英文으로 된 사이트도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e-마켓플레이스에서는 전문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훨씬 용이해진다.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전문가들을 통하여 거래목적물의 감정, 진품 여부 확인, 적정가격 제시, 거래성사 지원과 같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¹⁵⁾ 이를테면 금융시장에서의 블룸버그 통신사와 같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의 체결을 지원해주는 전문기관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시장이 그리 크지 않은 미술품·골동품 시장에서도 소더비, 크리스티와 같은 거래소가 오랜 기간 전통을 쌓으며 성가를 올리고 있음을 참고할 만하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각종 공매물건에 대하여 온라인 공매 포털사이트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¹⁶⁾

15)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유휴설비 매매를 알선하는 사이트(<http://www.findmachine.or.kr>)를 운영하고 있다. 매각설비에 관한 정보는 매각 희망자가 등록한 것을 그대로 제공하고 거래는 당사자들이 책임지고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매매중개기관이 중고차를 거래할 때처럼 약간의 수수료를 받더라도 설비의 상태를 조사하고 기준이 되는 감정가격을 제시한다면 거래가 보다 활기를 띌 것으로 생각된다.

16) KAMCO는 지난 40년간 자산처분을 위한 공매장을 운영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캠프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다양한 공매정보를 통합하여, 누구나 인터넷에서 직접 공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입찰자는 인터넷으로 입찰서를 직접 제출하고 입찰 집행자는 인터넷상에서 낙찰자를 선정하여 그 결과를 즉각 제공하며, 보증금 환급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다. <<http://onbid.co.kr>>.

그리고 e-마켓플레이스는 목적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 물건을 팔고자 하는 소유자(권리자), 금융업자(financier), 외국의 바이어까지 네트워크로 연결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필요하다면 거래 및 결제를 보장하는 기관이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네트워크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물리적인 조직의 통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하여 기능을 상호 연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예컨대 현금 흐름이 기대되는 기업동산은 자산유동화(asset-backed securitization: ABS)의 대상이 되어 유동화전문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SPC)에 양도하는 일이 많으므로 당해 물건이 유동화된 것인지, 아니면 동산담보로 제공된 것인지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유동화대상 자산은 현재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¹⁷⁾에 공시되고 있으므로 금감원 사이트와 링크시켜놓거나 목적물의 중복 여부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면 투자자, 원매자들의 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¹⁸⁾

담보권의 실행 과정에서 담보가치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고 담보물이 원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 전문회사와 중고 기계·기구 매매거래의 마켓 메이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업자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법제도상으로 담보권의 효력이 확실하고 담보권실행절차가 간편할 뿐만 아니라 그 비용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 배드뱅크의 필요성

IMF 외환위기 때 부동산담보에 치중하였던 국내 은행들은 엄청난 부실채

17) DART 시스템(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이라고도 한다. <<http://dart.fss.or.kr>>.

18) 동산담보제도가 발달한 미국에서도 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주정부와 연방정부 어느 곳에 어떠한 방식으로 담보권을 등록/등기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컴퓨터 기술을 활용하여도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등기 시스템의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이제는 한 번의 검색으로 모든 등기부를 검색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Lynn M. LoPucki, "Computerization of the Article 9 Filing System: Thoughts on Building the Electronic Highway," 55 Law & Contemp. Probs. 5 (1992).

권을 떠안았고 결국 KAMCO에 이를 매각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KAMCO는 자산유동화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매각하고 공적 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었다.¹⁹⁾

금융기관들이 기업의 기계·기구, 재고자산, 매출채권, 지적재산권 등을 담보로 취득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은 담보가치를 평가하기가 어렵고 담보자산을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경매를 통하여 담보물을 換價處分해야 하는데 적당한 원매자가 適時에 나서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도 이들 자산의 담보취득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목적물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현금흐름(cash flow)을 예상하고 분석할 수 있다면 투자자와 원매자들은 훨씬 안심하고 거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不實債權(non-performing loan)을 정리해 온 KAMCO와 같은 자산관리회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담보자산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배드뱅크(bad bank)를 만들 필요가 있다. 만일 KAMCO가 부실채권을 처분하듯이 담보목적물을 일괄 인수하게 한다면 채권은행들은 크게 염려하지 않고 기계·기구, 재고자산 등을 담보로 취득할 수 있을 것이다. 배드뱅크가 팔리지 않는 담보자산을 안정적으로 인수해 준다면 금융기관들은 종래 기피대상이었던 기업동산도 담보로 취득하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中古기계·기구, 재고자산을 효과적으로 매입해 줄 수 있는 基金을 설치하고 기업의 매출채권과 함께 자산유동화 같은 기법을 통하여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중고기계·기구, 재고자산은 앞에서 말한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전문기업을 통해 관리함으로써 그 가치를 높이거나 국내외 판매망을 통하여 좋은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을 것이다.

동질적인 대상자산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면 패키지로 매각하거나 유사한 것을 풀링하여 자산유동화를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중고기계가 東南亞 등지에 수출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국내 투자자는 물론 해외 바이어와 투자자까지 유치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19)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의 “업무소개”란 참조. <<http://www.kamco.or.kr/>>.

III. RFID를 활용한 動産擔保管理

1. RFID를 이용한 현행 문제점의 극복

유비쿼터스 시대에는 한 사람이 유·무선을 통하여 다수의 컴퓨터를 공유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수백, 수천 대의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으며, 어떠한 물체도 이와 같이 네트워크로 연결할 수 있다. 네트워크 대상도 PC는 물론 포켓용 컴퓨터, 이동전화, PDA와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를 가리지 않는다. 일상생활에서도 ‘스마트’라고 이름 붙인 옷, 시계, 안경, 휴대용 전자기기, 가구와 집기 등에 센서, 마이크로 칩을 내장시켜 인터넷망으로 연결(embedded Internet services)하는 꿈같은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

RFID 관련기술은 유비쿼터스의 핵심으로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²⁰⁾ 기술적인 난관도 하나하나 극복해 가고 있다.²¹⁾ 물론 여러 담보물(금속, 플라스틱류, 목재·종이류, 의류 등)에 부착 가능한 RFID 소재를 개발하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위·변조, 해킹, 복제방지 기술의 개발 및 대량·동시 판독상의 인식을 제고, 오류방지 기술을 개선하여 신뢰성을 확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현행 등기·등록제도에 적용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현행 제도와 호환이 되도록 하고, 등기소와 각 기업·공장의 플랫폼의 범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플랫폼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²²⁾

20) 현재 RFID/USN분야는 기술의 검증 단계를 넘어 시장형성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다. 전자태그는 미래 유비쿼터스 사회의 핵심이며 사회경제적 기본인프라로서 국방, 물류, 교통, 농수산 등 국가 사회 전 분야에서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절감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RFID/USN은 이동통신 산업을 능가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산업파급효과를 갖고 있다. 김창곤(정보사회진흥원장), “RFID/USN, 제2의 이동통신 신화를 기대한다”, 전자신문 칼럼, 2007.3.19.

21) RFID를 둘러싸고 문제가 되었던 것은 RFID의 성능 및 내구성, 기존 시스템과의 연결 작동 여부, 주파수 대역의 확보, 여러 기업간에 RFID를 제휴하는 경우의 시스템 오류, 그에 따른 거버넌스(自律規制방식)와 코스트 분담, RFID의 데이터 형식 및 운용(operation)의 공동화에 관한 것들이다. 또한 무권한자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본인 식별장치를 갖춰야 하고 위·변조, 복제, 무단 철거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도 필수적이다. RFID·리더의 표준화, 통신·데이터 프로토콜의 표준화, 업계이용의 표준화 등 표준화 작업도 시급하다. 오퍼레이션의 변경, 여러 발생 시의 대처방법, 이용자 교육, RFID가 여러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 그 前과 後의 오퍼레이션의 연결에 있어서도 기술적인 솔루션이 요청된다.

현행 기업동산담보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점유형 담보권에 필수적인 마땅한 公示方法이 없다는 것이다.²²⁾ 이를 위하여 신뢰성이 있고 간편하게 수용할 수 있으며, 현행 등기·등록제도에 큰 무리 없이 편입시킬 수 있고 도입에 많은 비용에 들지 않는 동산담보제도의 공시방법을 찾아야 한다. 기계·기구, 채고자산과 같은 기업동산은 이동가능성이 높은 데다 유사한 물건과 혼동되기 쉬우므로 그 特定性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수적이다.

그 해결방안으로는 소형이고 저렴하며 위·변조가 어려운 RFID태그가 최적이라고 할 수 있다. RFID는 기업의 담보관리 및 모니터링에 필요한 데이터의 읽고 쓰기가 가능하며, RFID 자체의 위·변조, 복제, RFID 부착물의 불법반출을 막을 수 있다. 금속에도 부착 가능한 RFID태그의 신기술이 속속 개발되고 있고, 그 가격도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또한 RFID 플랫폼을 인터넷망에 연결하면 법원의 현행 전자등기 시스템²⁴⁾에 적용하는 데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고 적잖은 비용이 드는 RFID태그를 쓰지 않고도 단순히 전자등기만 하는 식으로 기업동산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생긴다. 사실 RFID가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아 기술적으로 발전도상에 있고 그 설치비용도 아직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²⁵⁾ 동산담보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 그 밖의 어

22) 정보사회진흥원은 ‘u-IT 선도사업’ 중에서 RFID 확산/시범사업을 중점 지원하고 있다. 예컨대 2007년에는 RFID 기반 국가물품관리 서비스 고도화(조달청), RFID를 활용한 군수물자 관리시스템 확산(공군군수사령부), RFID를 활용한 u-기록물 관리(국가기록원), u-Airport 구현을 위한 항공수하물 RFID 인프라 구축(한국공항공사), u-의약품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보건복지부), 안전안심 u-먹거리 구축(한국식품공업협회), RFID 기반 검찰청 기록관리 시스템 확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의 프로젝트를 RFID 확산사업으로 선정하였다. <http://www.nia.or.kr/nca_news/notice02_20070327.htm>.

23) 현행 민법상 물건변동에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을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 및 특수동산(자동차, 중기, 선박): 등기, 등록 >동산: 점유(따라서 질권을 설정하려면 목적물을 인도해야 함) >양도담보는 ‘신탁적 소유권이전’이라는 관례상의 공시방법을 취하고 있다. 또한 기업동산은 기업이 계속 점유하고 사용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공시방법을 취할 수 없고 금융기관 앞 담보제공이 곤란한 실정이다.

24) 대법원은 1994년부터 등기특별회계법에 의거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전산화작업에 본격 착수, 1998년 10월에는 부동산등기, 2000년 7월에는 법인등기의 對民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그 결과 상업등기, 부동산등기 등 각종 신청 및 조회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는 나라에서도 아직 이러한 첨단 정보기술을 이용하거나 법제화하여 담보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RFID를 이용한 동산담보관리의 가장 큰 장점은 당해 목적물을 특정하고 이를 그대로 전자적으로 공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²⁶⁾ 만일 RFID의 이러한 장점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전자등기부에 목적물의 성상을 아무리 상세하게 기재한다 할지라도 혼동 가능성이 있고 등기검색비용이나 담보관리 비용이 많이 들게 될 것이다. 특히 거액을 빌려주는 채권은행들로서는 종전의 공장저당권에 목록 추가하거나 양도담보를 취득하던 기계·기구에 대하여 봉착하였던 도난·망실 등 담보관리상의 문제가 그대로 남는다. 법경제학상으로 RFID 설치에 드는 비용과 그에 따른 편익을 비교 분석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²⁷⁾

그러므로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기구, 창고 안의 재고자산에 RFID 태그를 부착하고 당해 물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록해 놓는다면 담보관리가 수월해지고 리스 물건과 혼동되거나 불법 반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RFID에 기록된 정보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법원 등기부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등기관이 등기번호, 등기연월일을 부여하고 내용 및 절차상의 오류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관리상의 어려움도 대부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또 다른 문제는 RFID를 이용한 새로운 公示方法을 채택하자면 物權法定主義에 입각하여 현행 동산담보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25) 효율적인 기업동산의 담보관리를 위해서는 생산공장의 기계장비에 모두 RFID태그를 부착시켜야 한다.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는 공정관리와 재고관리를 위해 1996년 RFID기술을 전격 도입하고 그 동안 시스템 구축에 1백억원을 투자하였다. 너무 일찍 도입하는 바람에 적잖은 시행착오도 있었으나 지금은 인력을 60% 이상 절감하고 연간 150억원 가량의 생산성 향상효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재고는 실시간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장기 재고는 80% 이상 감소하였다. 한국경제(B3), 2004.11.3.

26) 이에 관하여는 “비접유형 담보정보가 기록된 RFID 태그 및 이를 활용한 비접유형 담보정보 공시시스템”(특허 제10-0620399호)과 같은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

27) 미국에서는 동산등기부상의 채무자 이름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거액을 빌려주는 은행들은 등기조사비용으로 수만불씩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LoPucki, “The Spearing Tool Filing System Disaster”, March 2006. at 4, available at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890312.

2. RFID를 활용한 담보관리

실제 RFID를 활용한 동산담보관리 사례를 가상해 보면 다음과 같다. 기업이 담보로 제공할 기계·기구, 반제품, 재고자산에 RFID태그를 부착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당해 담보물에 관한 정보를 RFID에 입력한다. 여기서 RFID태그에 입력해야 하는 담보물에 관한 정보는 당해 물건에 관한 登記事項이 된다. 즉 물건을 特定할 수 있고 이를 등기한다면 당해 물건에 대한 권리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도록(효력발생요건) 할 필요가 있다.²⁸⁾ 다시 말해서 RFID태그가 부착 또는 내장된 물건에 대하여 動産抵當權²⁹⁾을 설정하고 이를 관리, 실행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RFID태그에 기록하고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목적물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기계·기구의 부품별,³⁰⁾ 또는 재고자산 등 목적물의 性狀, 제작자의 표시, 모델번호, 제작연도, 채무자의 상호·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채권자/담보권자의 상호·성명, 주소, 피담보채권(또는 양도담보, 리스) 등이다. RFID에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는 전자기록매체를 통하여 登記官에게 제출하고 소정 양식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한 다음 등기번호, 등기연월일을 부여받아 다시 RFID태그에 기록한다. 이 과정에서 등기관은 일정 기준에 어긋나는 RFID 기록에 대하여는 그 訂正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요컨대 RFID 기록과 등기부는 그 내용을 일치시키는 것이 담보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가칭) 기업동산 등의 담보에 관한 특별법 이 시행된다면 담보관리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즉, 동산담보물에 RFID태그를 부착한 후에는 채권은행의 위임을 받은 담보관리인이 정기 또는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RFID 리더기를 휴대하고 담보물 설치장소를 순회하는 것만으로 담보물건의 현황(status quo)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를

28) 동산담보의 등록을 처음으로 시행한 미국에서는 등록(filing)을 대항력(perfection)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으로 본다. 그러나 RFID와 전자등기를 통해 공시할 수 있는 이상 효력발생요건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

29) RFID태그가 부착/내장된 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RFID태그가 제거되거나 그 기능을 정지시키지 않는 한 善意取得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미국에서는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저당권을 “chattel mortgage”라 한다.

30) 담보목적물의 분리,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리가능한 부품별로 RFID태그를 붙여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표> RFID를 이용한 담보관리제도의 추진일정(예시)

단계별	추진 과제	관련기관
1. 타당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적 타당성 검토 - RFID, Reader의 설계 및 적용 -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터넷 연결 - 법인등기부 등재 가능성 - 비즈니스 모델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통신연구원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또는 시범사업체 - 법원행정처(등기소)
2. 시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사업 실시 - 중소기업 규모 공장에의 적용 - 일반 기업에의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진흥공단
3. 협력체제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 금융기관의 대출가능성 검토 - 중고기계 거래소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은행연합회 - 신보, 기술신보 - 중소기업진흥공단
4. 입법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화 추진 - 관련부처(법무부, 재경부, 법제처) 협의 - 국회 상임위 전문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 - 재정경제부 - 법제처
5.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범위의 확장 - 신기술 법제의 해외수출 - 개성공단 등 북한지역에의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자원부(특허청) - 통일부

자료: 박원일, “RFID를 활용한 금융기관의 담보관리방안”, 금융법연구, 2004.12, 185면.

등기부와 대조·확인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들도 인터넷을 통하여 등기소에 접속, 목적물이 일치하는지 조회해 보고 필요한 사항의 입력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당해 담보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해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등 RFID에 의한 담보권 설정 및 관리, 실행도 훨씬 용이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RFID를 이용한 새로운 동산담보제도는 <별표>에서 보듯이 사업추진의 효과를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동산저당권의 설정 및 관리에 무슨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리스 물건에 RFID를 부착하여 시행해 보고 신설 공장부터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시범사업을 통하여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한편 특히 RFID 기술 및 데이터의 표준화, 위·변조, 오류의 방지,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³¹⁾

이와 동시에 금융기관들이 채권담보의 법적 효력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규정의 제·개정 등 법제면의 준비 작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RFID를 활용한 담보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이 설 때 각종 대행 서비스, 중고기계 마켓플레이스의 설치, 수출 알선 등 관련사업의 인프라를 정비하고, 개성공업단지 등 南北經協사업에서도 RFID를 활용하여 관련사업을 전개하는 방안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공장 기계·기구, 재고자산을 조사하고 일일이 RFID태그를 부착하면서 관련정보를 기록하는 일은 수많은 전문 인력을 동원해야 하고 비용도 많이 드는 작업³²⁾이다. 이것도 청년실업대책 차원에서 국가적 지원을 받아 시행한다면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새로운 동산담보제도의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경과조치가 필요하다. 즉, 기존 공장의 공장저당권에 목록 추가되었거나 양도담보가 설정된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현황조사를 마친 후 RFID태그를 부착하고 소정 사항을 기록하여 등기를 할 때 기존 공장저당권의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하고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제1 순위 동산저당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RFID를 활용한 동산의 담보관리는 상업등기부를 관장하는 법원 등기소에서 관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公益事業으로 수행하여야 함을 관련법률에 명시하도록 한다. RFID 담보관리에 관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BM)을 고안하여 사업화하는 경우에는 BM 특허를 인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³³⁾

31) 담보관리용 RFID의 표준화는 담보관리 수요에 부응한 데이터의 표준화, 호환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RFID 및 리더의 규격(spec), 프로토콜 부분과 해킹 등 정보보안 시스템, 소유자·채권자 등의 개인정보보호(privacy) 정책 부분에서 표준화가 이루어져야만 기술의 효율성,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ID 코드·주파수대역의 관리 및 할당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산자부 기술표준원에서는 RFID 관련 국가표준(KS)을 제정·보급하고 있다.

32) RFID 기술의 진보로 전자태그 가격은 많이 하락하였으나 공장을 일일이 방문하고 분리가능한 기계 부품별로 데이터를 작성하여 이를 RFID태그에 기록하고 목적물에 부착하는 일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이다. 상업등기부가 전산화되어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에 동산담보 및 채권양도의 등기 난을 신설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으나, 인터넷 기반의 전자등기 시스템을 설계하고 등기소의 전산망과 개별 공장의 RFID 시스템을 연동시키는 일은 단계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모든 사업은 그 정책적·경제적 효용에 비추어 전자정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3) 예를 들면, 채권은행을 위한 전자방식의 담보관리 대행 서비스와 같은 것은 비즈니스 특허를 통해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RFID 담보관리 기술 및 하드

요컨대 RFID를 이용한 새로운 동산담보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우 담보여력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다. 資産健全性規制(BIS Rule)를 받고 있는 금융기관들도 부동산담보 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중소기업 동산담보를 통한 신규여신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은행 실무에 있어서도 기업의 재고자산이나 매출채권 등의 변동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변동에 신속성 있게 대응함으로써 기업 활동에 맞게 여신을 취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계·기구, 재고자산 등 중소기업의 유형재산에 RFID태그를 부착할 경우 종전의 이중담보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불식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효율적인 담보관리가 가능해진다. 그리고 一物一權主義 원칙을 유지하면서 電子的인 公示方法을 갖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음에 설명하는 매출채권을 포함한 기업의 모든 가치 있는 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므로 英美의 浮動擔保에 필적하는 담보제도의 혁신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³⁴⁾

RFID 기술을 동산담보제도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RFID 기술에 대한 대량 수요가 발생하게 되고 IT 관련산업 및 서비스업이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법제와 그 운용기술 및 소프트웨어를 새로운 동산담보 법제를 필요로 하는 나라에 수출하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³⁵⁾이다.

IV. 채권양도의 登記

1. 매출채권을 이용한 자금조달방안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기업의 자산 중에서 충분히 그 담보가치를 활용하지

웨어/소프트웨어의 해외수출에 대비하여 주요국에는 RFID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출원함으로써 국가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34) 박원일, “RFID를 활용한 금융기관의 담보관리방안”, 금융법연구, 192~193면.

35) 체제전환국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이 동산담보법제의 정비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RFID를 이용한 동산담보관리 방안은 법제 및 기술의 수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된다. 중남미에서도 美洲국가기구(OAS)의 주도로 2002년 2월 미주담보거래모범법(Model Inter-American Law on Secured Transactions)이 마련되었으며, 과테말라가 이를 토대로 한 담보법 제정을 2004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Sandra M. Rocks, Kate A. Sawyer,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2004 Developments,” Survey-Uniform Commercial Code, 60 Bus. Law. 1745, 1754 (2005).

못하는 것 중에는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대금청구권(account receivables: 이하 “매출채권”이라 함)이 있다. 현재 기업들이 물품의 매매·대여, 용역의 제공 등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매출채권을 취득하였을 때 그 변제기 전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세 가지가 있다. ① 제3자에게 양도(outright assignment)하고 대가를 지급받거나 기존 채무를 면제받는 것, ② 할인(discount) 받는 것, ③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assignment by way of security)하고 대출을 받는 것 등이 그것이다. 첫 번째 방법은 일반적인 지명채권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두 번째 방법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어음을 받아 이를 할인 받는 식으로 이용하게 된다. 만일 세 번째 방법을 널리 이용할 수 있다면 기업들이 특히 物的 擔保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추가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³⁶⁾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세 가지 방법이 모두 電子方式으로 이용되고 있다. ①은 자산유동화(ABS) 거래를 통하여 행하여진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자산보유자(originator)가 유동화 대상인 매출채권을 集合(pooling)하여 유동화전문회사(SPC)에 양도할 때 금융감독위원회에 유동화 대상자산의 명세를 전자기록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바, 그 내용이 금융감독원의 電子公示(DART) 시스템을 통하여 공시되고 있다. ②는 2005년 9월부터 전자어음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2004.3.22 공포, 2005.1.1 발효)에 의하여 전자어음도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③은 2000년 2월 정부의 어음제도의 개선방향³⁷⁾에 따라 전자방식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형태로 널리 행해지고 있다.

이상과 같이 매출채권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에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인 通知를 등기로 갈음하는 것은 널리 제3자에 대

36) 박환일, “전자채권등록제도와 국내 입법”, 국제거래법연구, 107면.

37) 재정경제부는 어음의 분실, 위·변조 사고가 끊이지 않는 데다 신용경색기(credit crunch)에 받을어음의 연쇄부도로 흑자도산이 속출하자 어음제도의 점진적 폐지를 유도하기로 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IMF 사태 직후 25~30%의 초고금리와 신용경색이 이어지면서 흑자도산이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일부 신용이 떨어진 기업의 부도가 발생하면서 어음거래가 위축되고 이는 다시 자금난에 처한 기업의 부도를 유발하였다. 삼성경제연구소, IMF 사태 이후 업종별 동향(1), 1998.3.17. 이에 따라 정부는 취급은행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가며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기업구매전용카드제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하여 채권양도의 사실을 확실하게 公示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①의 유동화는 현금흐름이 기대되는 채권을 상당한 규모로 집합할 수 있을 때라야 현금화가 가능하고, ②는 금전채권을 거래은행을 통하여 전자어음의 형태로 발행·교부 받을 때라야 이용할 수 있는데 전자어음의 실제 활용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③은 채권·채무의 거래당사자가 대기업과 협력업체인 경우에 거래은행이 관여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약이 따른다. 더욱이 전자채권의 양도가 거래은행과 금융결제원을 통하여 이루어짐에도 금융결제원이 공무소가 아닌 관계로 내용증명우편 등을 통하여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에 특칙을 두어야 했다.³⁸⁾

그러므로 채권양도를 등기할 수 있다면 당해 채권의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하여 통지를 한 것으로 보므로 對世의 효력을 갖게 된다. 이는 중소기업이 금전채권을 가진 경우 보다 확실하게 채권양도를 등기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채무자의 또 다른 채권자를 포함한 누구에 대해서나 채권양도의 사실을 주장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2. 채권양도 대항요건의 登記에 따른 이점

채권양도의 대세적 효력은 다수의 채권자가 서로 다투는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예컨대 A사가 여러 채권자 중 하나인 B사에 금전채권을 양도하였을 때 다른 채권자의 간섭을 피하고 채무자의 이중변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별통지(separate notice)하는 것보다 등기에 의한 공시(public notice)가 더 효과적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C은행이 아파트 건설업체에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으로 자금을 공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 C은행은 아파트분양대금을 수입하는 계좌를 시행사 명의로 개설하고 동 예금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취득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시행사는 자재납품업체, 건설근로자 등 수많은 채권자를 두고 있으며 이들 채권자는 제3 채무자인 C은

38)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 제20조에 의하면 금융결제원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 행해지는 채권보관은행의 구매기업에 대한 통지에 유효하게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다.

행이 질권 취득한 예치금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압류 신청이 들어오는 것만으로 C은행이 질권행사에 지장을 받는 터에 많은 경우 本案訴訟까지 벌어져 재판 결과 거액을 대출해준 C은행이 예치금을 가지고 대출채권의 회수에 충당할 수 없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그러나 채권양도계약을 곧바로登記할 수 있다면 채권을 양수한 은행은登記시점을 기준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優先權을 주장할 수 있으며, 그 만큼 다른 채권자가 이를 압류, 가압류할 가능성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현재 자산유동화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유동화계획을 등록하는 즉시 유동화대상 자산목록이 금융감독원의 DART 시스템을 통하여 곧바로 공시되는 것과 별 차이가 없게 된다.

또 채권양도계약을登記하는 경우 채권의 移轉的 양도계약뿐만 아니라 채권을 담보 목적으로 하는 設定的 양도의 합의도登記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채권의 교환·할인 등의 債權的 계약은 물론 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과 같은 物權的 합의도登記의 대상이 될 수 있다.³⁹⁾ 채권양도의 特例를 인정하자면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하거나 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발생할 것이 확실한 채권까지도 양도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현재 자산유동화, 전자어음, 전자채권 등 매출채권을 이용한 자금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채권양도계약을登記소에登記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의 해당 사이트를 조회하거나 서로 연결하여 볼 수 있게 한다면 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 법제정비방안

기업이 보유자산을 이용하여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려면 현행 법제와는 다른 동산담보 및 채권양도에 관한 特例를 인정하고 담보로

39) 일본의 경우 일찍이 채권양도등기를 법제화할 때 도쿄 법무국 민사행정부 채권등기과에서만 취급하였는데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편리성과 채권양도 대항요건의 안전성 때문에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e-Japan' 전략의 일환으로 온라인 신청제도를 도입하였다. 2000년부터는 상업등기의 전자인증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인터넷에 의한 채권양도등기를 보다 활성화하였다. 박원일, “전자채권등록제도와 국내 입법”, 국제거래법연구, 105면.

제공된 기계류, 지적재산권 등의 매각·유통을 촉진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칭) 기업동산 등의 담보에 관한 특례법(안) 및 이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에 다음 사항을 규정하도록 한다.⁴⁰⁾

- 기계·기구, 재고자산 등 기업동산에 전자식별표를 부착·내장하고 여기에 기록된 목적물을 特定할 수 있는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등기부에 기재하여 公示한다. 다만, 법과 시행령에서는 기술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전자식별표를 ‘RFID태그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이라 하고 그 기능을 중시하며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즉시 채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인다.
- 전자식별표가 부착·내장된 기업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動産抵當權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동산저당권의 被擔保債權으로는 일괄하여 특정할 수 있는 채권,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하거나 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발생할 것이 확실한 채권, 외국법에 의하여 인정된 채권도 허용한다.
- 전자식별표가 제거되었거나 그 기능이 정지되어 있는 담보목적물의 동산저당권자는 이를 善意로 過失없이 취득한 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이 법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로서 공장저당권에 목록 추가된 담보목적물은 전자식별표를 부착·내장하고 동산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후 당해 공장저당권의 목록에서 제외하는 변경등기를 함으로써 종전 공장저당권의 순위를 유지한 채 동산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集合物양도담보의 목적이 된 담보목적물도 채무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전자식별표를 부착·내장함으로써 제1순위의 동산저당권을 설정(등기연월일은 양도담보 계약체결일)할 수 있도록 한다.
- 법인의 금전채권을 양도할 때 이를 등기할 수 있으며 등기시점을 確定日字로 한다.
- 등기되어 있는 동산이나 채권양도에 대하여는 등기사실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기업이 보유하는 지재권은 당해 지재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담보로

40) 필자가 본고의 취지에 맞게 작성한 동 법률안 및 시행령의 試案은 필자의 홈페이지 <http://onepark.khu.ac.kr/Artcl/draftRFID_mov_legis.pdf>에 올려져 있다.

제공하되, 환가처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가 협력하도록 한다.

- 정부기관을 통하여 중고 기계 및 지재권의 매각·유통을 지원하는 온라인/오프라인 거래소(e-마켓플레이스)의 설치,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팔리지 않는 담보물을 인수하는 배드뱅크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다.⁴¹⁾

본고에서 제안하는 특례법은 첨단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동산담보권의 득실변동 및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特例를 인정⁴²⁾하는 동시에 정부의 산하기관이 취급업무에 부가하여 기업동산, 지재권의 매각·유통을 촉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실체법과 등기절차를 규정하는 절차법, 그리고 담보물의 매각·유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촉진법을 하나의 법률과 그 시행령에 담고 있다. 공시방법으로서 RFID라는 첨단 정보기술을 채용하고 있기에 하부규정에 위임할 수밖에 없는 사항도 적지 않다.

기업동산 및 채권양도의 등기는 자금조달의 주체인 법인기업의 등기부에 기재하는 人的編成主義가 원칙이다. 따라서 당해 법인등기부에 등재하여야 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기존 상업등기부의 안전성을 위하여 동산 및 채권의 등기부 파일을 별도로 관리·운용하고 있다.

41) 정부의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시행함에 있어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특허청 등의 산하기관이 이러한 업무를 현재 취급하고 있거나 앞으로 수익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다면 정부는 예산의 틀만 짜놓으면 될 것이므로 당장 예산조치를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42) 로푸키 교수는 RFID태그에 기록된 데이터를 그대로 전자적으로 등기부에 옮길 수 있는 편리한 점은 있으나 담보물의 ‘재고자산’ 이상으로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무슨 돈이 되는 이점(commercial benefits)이 있는지 의문을 표하였다. 그리고 담보물에 관한 사기를 방지하거나 점검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利點만으로 과연 태그를 위·변조하거나 제거할 위험성을 능가할 수 있는지 검토를 요한다고 지적했다. 이 논문을 완성한 시점에서 정부의 ‘4·20 RFID/USN사업 육성책’이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이 바로 로푸키 교수의 코멘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즉, 기업들이 재고자산 등에 RFID태그를 부착 관리하고 [본고의 제안이 시행될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은행담보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채권은행들이 안심하고 동산담보부 대출을 늘리게 되어 기업활동이 활기를 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RFID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관련기술과 산업이 발달하고, RFID/USN사업이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발전한다. 이에 따라 관련제품·기술의 해외수출이 증가하고 이를 설치·운용하는 일자리가 많이 생겨 청년실업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조선일보, “전자태그 ‘제2 반도체’로 집중 육성”, 2007.4.22.

이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은 첫째, RFID 기술을 활용하여 동산담보관리 목적으로 법제도를 정비함에 있어서 시범사업을 통해 금융기관들이 새로운 동산담보에 대한 담보가치, 담보관리방법, 담보권 취득 및 실행절차에 만족하고 기꺼이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법인기업[會社]이 이러한 새로운 담보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더라도 제도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個人채권자에 대하여도 상업등기부를 만들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RFID 기술을 이용한 공시방법을 법적으로 인정해 주고, RFID 등을 부착한 기업동산에 전자방식으로 담보권⁴³⁾을 설정하는 것은 부동산에 저장권을 설정하는 기존 물권변동에 준해서 생각하면 될 것이다. 다만, 이 법에는 담보권 설정자 및 담보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되, 기술적으로 RFID 등이 부착된 담보물건에 대하여 리더기와 인터넷을 통해 등기소의 법인등기부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근거규정도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이 특정 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의 존재, 담보물건의 일치 여부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담보권자는 담보권의 취득·실행·소멸을 전자방식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제어: 기업동산, 재고자산, 비점유형 담보권, RFID, 전자등기

43) 기업동산에 대한 담보권의 성질은 登録擔保權(registered charge)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에는 담보권 설정자 및 담보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외에도 피담보채권 및 그 양도, 담보목적물의 거래, 제3 취득자, 담보권의 실행, 환가방법, 대금의 배당, 담보권과 관련된 손해배상 기타 권리구제, 담보권의 소멸 등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 김재형, “동산담보등록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 연구용역보고서, 2006.2.
- 남윤삼, “우리나라 동산담보제도의 개선방향(上) -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사법행정, 1999.2.
- 박원일, “전자채권등록제도와 국내 입법”, 국제거래법연구 제15집 1호, 2006.7.
- _____, “RFID를 활용한 금융기관의 담보관리방안”, 금융법연구 제1권 2호, 2004.12.
- _____, “남북경협 확대에 대비한 북한 담보제도의 정비방안” 집문당, 2004.1.
- _____, “미국의 부동산담보제도”, 비교사법 제10권 4호, 2003.12.
- 양창수, “독일의 동산담보개혁논의 - 비점유동산담보제도를 중심으로”, 법학, 제44권 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6.
- 日本 企業法制研究會(擔保制度研究會) 報告書, 不動産擔保から事業の収益性に着目した資金調達へ, 經濟産業省, 2003.1.
- Kozolchyk, Boris (ed), “Meeting of OAS-CIDIP-VI Drafting Committee on Secured Transactions Conference Transcript Day Four XII. Consensus on Phase III: The Creation of a Modern Secured Transactions Registry for the Western Hemisphere,” 18 Ariz. J. Int'l & Comp. L. 594 (2001).
- LoPucki, Lynn M., “The *Spearing Tool* Filing System Disaster”, UCLA School of Law, Law-Econ Research Paper No. 06-10 (March 26, 2006) available at SSRN: <http://ssrn.com/abstract=890312>.
- _____, “Computerization of the Article 9 Filing System: Thoughts on Building the Electronic Highway,” 55 Law & Contemp. Probs. 5 (1992).
- Rocks, Sandra M. and Sawyer, Kate A.,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2004 Developments”, Survey - Uniform Commercial Code, 60 Bus. Law. 1745 (2005).
- 각 언론사의 인터넷 기사: 조선일보, 2007.4.22; 연합뉴스, 2007.2.15; 매일경제신문, 2006.8.2; 파이낸셜뉴스, 2006.7.24.
-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홈페이지 <<http://www.kamco.or.kr>> 및 공매 포털사이트 <<http://onbid.co.kr>>.
- 미주 자유무역법센터(National Law Center for Inter-American Free Trade: NLCIFT) <<http://www.natlaw.com/projects/securedtrans.htm>> [이상 2007.4.22 검색].

【Abstract】

Proposed Legislation on the Secured Transactions in Reliance on the Corporate Movable and Account Receivables

Whon-II Park

Recently Korean banks are busy in finding new paths to business. It's because various regulations of the Korean government on commercial lending to the acquisition of apartments and houses, and the impending Basel Accord II on prudential requirements forced them to diversify collateral from real estate to machinery, inventories and account receivables. In order to boost business activities, the government is pursuing a new collateral system which makes use of non-real estate properties possessed by business entities. In view of the same kind of collateral system employed by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e electronic filing system seems to be inevitable in Korea.

It is becaus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e restricted from borrowing money by granting personal properties as collateral to the banks. They are required to deliver those movables or transfer their title on a fiduciary basis to creditors. And the banks are reluctant to take movables as collateral owing to the expected sharp depreciation of their value and the possibility of loss and theft.

The solution could be sought from the state-of-the-art information technologies. Under the current laws, factory machinery and equipment can be provided to creditors as collateral only if they are listed on the mortgage registry of the factory site or building (Para. 1 Art. 7 of the Factory Mortgage Act). The inventory in a specified warehouse can be granted as collateral by means of the collective fiduciary transfer of title. A civil law country does not recognize the floating charge over the whole corporate assets as provided for in UCC Article 9.

Is there any technological breakthrough in this kind of secured transactions? The answer is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or RFID, which is increasingly used in logistic industries. The RFID tag is a kingpin in ubiquitous computing or ubiquitous sensor networks. As we can read and write in a RFID tag, this tiny tag enables each movable item to be electronically specified and notified individually to the public.

As a result, the RFID tag, whose data will be electronically filed with the official

registry, makes it possible for a debtor to possess and use the movables even though they are already granted as collateral. RFID tags are attached to or embedded in movables on a selective basis only if the debtor possessor wants them as collateral. If the debtor removes them or stops the function of RFID tags on the personal property, it will be treated in the conventional way.

Here we have an important question. That is whether we can take corporate movables as collateral simply by means of electronic registration. In fact, more technologically perfect and cost-saving RFID-related products are badly needed since RFID was widely used in the early 2000s.

However, the first and foremost benefit related with RFID registration is that we can specify the movable collateral and notify the presence of prior security interests thereon to the public. If we could not enjoy such benefit, we have to pay a handsome amount of fees or losses in search of the similarly described collateral on the electronic registry, or for the redemption of lost collateral. As for creditor banks, which used to extend large loans secured by machinery, equipment and inventories, the difficulties and problems concerning the possibility of commingling and confusion, loss or theft of collateral remain intact unsolved.

Other benefits of RFID tags would be enormous when they could create a useful database of collateral assets which should be ultimately disposed at a reasonable price to satisfy the creditors. Furthermore, RFID technologies might be advanced while being adopted to the new collateral system, and it will create big markets for such a new technology as well as RFID-related industries.

In this connection, any creation and change of the security interest should be subject to the registration under the relevant law, not in existence at present. The RFID tag-attached collateral can be easily detected and administered by a creditor's agent equipped with a RFID reader. To effectuate this system, the writer is proposing a draft "Act on the Exceptional Treatment of Corporate Collateral Assets" and the Enforcement Decree thereof, whose Korean text is available at <http://onepark.khu.ac.kr/Artcl/draftRFID_mov_legis.pdf>.

Key Words : Corporate Movables, Inventory, Non-Possessory Security Interest,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 Electronic Filing/Registration